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사시켜 지역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경일대학교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 출연예정액 : 200백만원

나. 주요 사업

- 경일대 향토생활관 지원
 - 향토생활관 이용 협약 체결 및 20명 입사자격 부여
 - 지자체 추천자 생활관비 50% 장학금 지급(5년/년 90만원, 1인당)

다. 출자·출연의 필요성

- 학생들의 학업분위기 향상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관·학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교육기본법」 제27조
-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유 익 수
	담 당	이 건 호
	담 당 자	김 동 기 (480-6782)